

4.1.1 직제규정

제정	1995. 09. 12.	개정	2018. 10. 23.	개정	2022. 04. 28.
개정	2000. 04. 21.	개정	2019. 07. 16.	개정	2022. 06. 09.
개정	2001. 09. 10.	개정	2019. 12. 03.	개정	2022. 12. 07.
개정	2006. 10. 19.	개정	2020. 02. 05.	개정	2023. 02. 02.
개정	2009. 11. 10.	개정	2020. 07. 28.	개정	2023. 09. 27.
전부개정	2013. 02. 06.	개정	2020. 09. 04.	개정	2024. 04. 01.
개정	2013. 08. 26.	개정	2020. 11. 26.	개정	2024. 06. 03.
개정	2013. 11. 29.	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07. 23.
개정	2017. 02. 22.	개정	2021. 02. 16.		
개정	2017. 09. 14.	개정	2021. 03. 25.		
개정	2018. 01. 25.	개정	2021. 06. 02.		
개정	2018. 09. 05.	개정	2022. 03.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초당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초당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의하여 본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총장,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07.16.>
3.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원, 기술직원, 기능직원 및 계약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06.02.>
4. ‘조교’라 함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학과조교, 행정조교를 말한다. <개정 2017.02.22.>

제4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정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기) 이 규정이 정하는 전임교원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6조(기구)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단과대학, 계열 및 학부 또는 학과 <개정 2023.02.02.>
2. 대학원
 - 가. 일반대학원
 - 나. 특수대학원
3. 대학본부
4. 부속기관
5. 연구기관

6. 산학협력기관

- ② 총장 또는 부총장 직속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직위와 보직

제7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8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하며, 교무부총장, 행정부총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4.28.〉

② 교무부총장은 교무, 기획, 학생 및 입학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4.28.〉

③ 행정부총장은 사무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대학수익사업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04.28.〉

제9조(대학원장) 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학사운영, 교육·연구경쟁력 확보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대학원을 대표한다.

제9조의2(학장) ① 대학에는 항공대학, 간호대학 글로벌혁신대학, 창의융합대학을 둔다. 〈개정 2023.09.27.〉

②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며,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소속학과(부)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23.09.27.〉

〈조 신설 2023.02.02.〉

④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유관 학과장 등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제10조(부서장) ① 대학본부의 각 부서에 부서장을 두고, 각 부속기관에 부속기관의 장을 둔다(이하 '부서장'으로 통칭한다).

② 각 부서장은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학본부의 각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하고,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대학본부의 각 부서에 부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부부서장은 부서장을 보좌하고, 부서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학과(부)장) ① 삭제 〈2023.09.27.〉

②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 및 부학과(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유관 학과(부) 등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2023.09.27., 2024.06.03., 2024.07.23.〉

③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의 학사과정 및 석·박사학위과정의 교무와 학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휘·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7.02.22., 2023.09.27.>

제12조(HUMAN PLUS 교양학부) ① HUMAN PLUS 교양학부에 HUMAN PLUS 교양학부장을 둔다. <개정 2019.12.03., 2022.03.02.>

② HUMAN PLUS 교양학부장은 HUMAN PLUS 교양학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2.03., 2022.03.02.>

제13조(기타 보직) ① 학과(부)장과 전공주임교수는 각 학과(부) 또는 전공의 학사 및 행정 업무를 관장하며, 교원으로 보한다.

② 각 부서와 부속기관에 두는 팀(센터, 실, 부 등을 포함)의 장은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조정 처리하고 소속직원의 업무를 지도·평가하며,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14조(개방형 직위)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계열, 대학원 및 부속교육기관

제15조(학부 및 학과) 각 학부 및 학과와 대학원의 학과(전공)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2.22.>

제16조(교학과(팀)) ① 각 대학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과(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② 교학과(팀)는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2.22., 2023.09.27.>

제17조(학사운영위원회) ① 각 단과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2.22., 2019.12.03., 2023.09.27.>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소속학과(부)장, 전공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구성과 운영은 각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2.22., 2023.09.27.>

제18조(부속교육기관)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1. 삭제 <2013.08.26.>
2. 삭제 <2020.02.05.>
3. 삭제 <2017.02.22.>
4. 삭제 <2020.02.05.>
5. 삭제 <2013.08.26.>

제19조(교학과) ① 각 대학원의 교학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교학과를 둔다.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대학원의 제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총장직속기구

제20조 삭제 <2017.09.14.>

제21조(홍보실) 본교의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보실을 둔다. <개정 2017.09.14.>

제22조(비서실) ① 총장 및 부총장의 신속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② 수도권 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총장비서실 산하에 서울사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2.05.>

제22조의 2 ① 삭제 <2020.11.26.>

② 삭제 <2020.11.26.>

제22조의 3(법무감사실) 각종 법령의 해석, 자문 및 대학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무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0.02.05.>

제22조의 4 삭제 <2023.02.02.>

제 6 장 대학본부

제23조(기획연구처) ① 본교의 발전기획, 정책개발, 업무조정, 규정 제·개정, 예산, 연구진흥, 연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연구처를 둔다. <개정 2018.10.23.>

② 기획연구처에는 기획연구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2.05.>

③ 삭제 <2020.02.05.>

④ 기획연구처에는 글로벌LiFE지원단, 지방대학활성화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성과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09.27.>

⑤ 글로벌LiFE지원단에는 성인학습자지원센터, 산학공동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09.27.>

제24조(교무처) ① 본교의 교무, 학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무처를 둔다.

②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교육지원 관련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02.05.><개정 2020.11.26., 2022.06.09.>

제25조(학생복지처) ① 본교의 학생지원, 장학, 사회봉사, 종합민원(CS)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를 둔다.

② 학생복지처에는 학생과, 초당지역공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02.05.>

제26조(사무처) ① 본교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02.05.>

제27조 삭제 <2017.02.22.>

제28조(입학처) ① 본교의 입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처를 둔다.

② 입학처에는 입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2.05.>

③ 입학과 내에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05.>

제28조의 2 삭제 <2022.06.09.>

제28조의 3(국제교류교육원) ① 국제교류협력, 내·외국재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유학생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원을 둔다. <신설 2020.02.05.>

② 국제교류교육원에는 국제교류지원팀, 한국어교육센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02.05.><개정 2022.06.09.>

제28조의 4(학생성공진흥원) ① 대학 내·외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정책, 개선계획 수립 및 비교과교육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저성취학습자 지원 관리 및 중도탈락 사전 예방 관리를 총괄하며, 비교과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학생성공진흥원을 둔다. <신설 2022.06.09.><개정 2023.02.02., 2024.04.01.>

② 학생성공진흥원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06.09.><개정 2023.02.02.>

제7장 부속기관

제29조(중앙도서관) 본교의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을 둔다.

① 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신설 2018.0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1.25.>

제30조(정보전산원) 교수연구, 학생실습 및 학사업무를 지원하고, 대학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전산원을 둔다.

제31조 삭제 <2017.02.22.>

제32조 삭제 <2020.02.05.>

제33조(박물관) 본교의 박물관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둔다.

제34조(생활관) 본교 생활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제35조(평생교육원) 본교의 사회교육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둔다.

제36조(산학연지원센터) ① 본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관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산학연지원센터 산하에 서울산학연센터와 광주산학연센터를 둔다.

제37조 삭제 <2017.02.22.>

제37조 2(비행교육원) ① 본교의 비행교육 기관으로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비행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3.11.29.>

② 비행교육원의 명칭은 “초당대학교 콘도르 비행교육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3.11.29.>

③ 비행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29.>

제37조의3 삭제 <2020.02.05.>

제37조의4 삭제 <2020.02.05.>

제37조의5 삭제 <2020.02.05.>

제37조의 6(항공기술교육원) ① 본교의 항공정비 전문교육 기관으로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항공기술교

육원을 둔다. <신설 2020.07.28.> <개정 2021.06.02.>

② 항공기술교육원의 명칭은 “초당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라 칭한다. <신설 2021.06.02.>

③ 항공기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7.28.> <개정 2021.06.02.> <항 변경 2021.06.02.>

제37조의 7(초당드론교육원) ① 본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전문인력 전문교육 기관으로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초당드론교육원을 둔다. <신설 2020.09.04.>

② 초당드론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9.04.>

제37조의8(IR센터) 대학차원의 전반적인 종합성과지표 구축 및 모니터링, 대학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IR센터를 둔다.<신설 2024.06.03.>

제8장 기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산학협력기관<개정 2013.11.29., 2020.09.04.>

제38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과 팀(센터, 실, 부 등을 포함)을 둔다. <개정 2013.11.29., 2020.09.04.>

1. 삭제 <2020.02.05.>
2. 삭제 <2022.06.09.>
3. 삭제 <2020.02.05.>
4. 공무원양성센터
5. 삭제 <2020.02.05.>
6. 삭제 <2020.02.05.>
7. 건강증진센터 <개정 2013.08.26.>
8. 구강보건센터
9. 삭제 <2017.09.14.>
10. 초당역사관
11. 안경박물관
12. 소방박물관
13. 예비군대대 <개정 2018.10.23., 2021.06.02.>
14. 삭제 <2020.02.05.>
15. 인권센터 <신설 2017.02.22.>
16. 삭제 <2019.12.03.>
17. 삭제 <2020.02.05.>
18. 삭제 <2020.02.05.>
19. 초당시니어건강지원센터 <신설 2020.09.04.>
20. ABC 시뮬레이션센터 <신설 2022.12.07.>
21.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신설 2022.12.07.>

② 각 부속기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02.22.>
2. 건강증진센터, 구강보건센터, 예비군대대, 인권센터, 초당시니어건강지원센터 : 학생복지처 <개정 2013.08.26., 2017.02.22., 2018.09.05., 2018.10.23., 2019.12.03., 2020.02.05., 2020.09.04., 2021.06.02.>
3. 삭제 <2017.09.14.>
4. 초당역사관, 안경박물관, 소방박물관 : 사무처 <개정 2017.02.22.>
5. 공무원 양성센터, 심폐소생술교육센터 : 학생성공진흥원 <신설 2017.02.22.><개정 2017.09.14., 2018.09.05., 2019.07.16., 2020.02.05., 2020.12.31., 2022.06.09., 2022.12.07.>
6. 삭제 <2020.02.05.>
7. 삭제 <2019.12.03.>
8. ABC 시뮬레이션센터 : 간호학과 <신설 2022.12.07.>

제39조(연구기관) ① 본교에 연구기관을 두며, 교책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으로 구분한다.

- ② 삭제 <2017.02.22.>
- ③ 일반연구기관은 각 학과(부)에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 ④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 ② 삭제 <2020.09.04.>
- ③ 본교의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기술이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업지원서비스센터, 드론교육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각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14., 2020.11.26.>
- ④ 삭제 <2020.09.04.>
- ⑤ 산학협력단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 ⑥ 삭제 <2017.09.14.>

제40조의 2 삭제 <2023.09.27.>

제40조의 3(지역혁신사업단) ① 지역혁신사업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사업단을 둔다.

- ② 지역혁신사업관련 조직·운영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0.09.04.>

제9장 교직원

제41조(교원) ① 본교에 학생을 교수하기 위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둔다. <개정 2019.07.16.>

- ② 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석좌·초빙·객원·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42조(직원) ①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사무직원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1. 행정·사서직: 2급~9급

2. 기술직 : 4급~9급

② 행정·사서직원으로서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대학본부 부서장은 참여, 부속기관 부서장, 센터장, 실(소,부)장은 5급,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실험·실습·실기의 보조 및 행정업무의 보조와 기능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2.22.>

1. 삭제 <2017.02.22.>

2. 삭제 <2017.02.22.>

3. 삭제 <2017.02.22.>

제43조(연구원) 본 대학교에 연구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조교) 본 대학교에 교육·연구·실험실습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정원) 교직원의 정원은 법인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되, 연간 운영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회의 및 위원회

제46조(교수회) ①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 계열별교수회로 구분한다.

③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계열별 교수회는 당해 계열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교무위원회) ① 교무,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본부 부서장으로 조직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대학운영위원회) ① 일반행정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2.22.>

②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 홍보실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류교육원장, 정보전산원장, 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2.22., 2017.09.14., 2020.12.31.>

③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참석범위를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각 학부장, 도서관장, 국제교류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생활관장, 비행교육원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④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대학발전전략위원회) ① 본교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2.22., 2020.02.05.>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6.>
-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2.22., 2020.11.26.>
- ④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① 본교 교원(총장 제외)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초당학원의 정관에 따른다.

제51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중요 학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초당학원 정관 제3장 제5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기타 위원회) ① 학교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심의, 교육활동 및 학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규정심의위원회
3.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 <개정 2020.11.26. 2021.02.16.>
4. 교양교육위원회 <개정 2020.11.26.>
5. 장학위원회
6. 교원업적평가위원회
7. 직원성과평가위원회
8.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9.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 ②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장 대학본부의 처, 과, 계 조직 및 제6장 대학원, 제7장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의 조직은 본 대학교 학생정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장의 결정으로 통합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 초고속정보화센터규정
 - 환경기술연구소규정
 - 환경기술연구소운영세칙
 - 환경기술연구소논문투고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강사법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과목이수면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신청절차 및 승인)제1항 중 “교양학부”를 “HUMAN PLUS 교양학부”로 한다.

제4조(신청절차 및 승인)제2항, 서식1 부분 중 “교양학부장”을 각각 “HUMAN PLUS 교양학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부)장 직위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